

뉴질랜드에서 공부하는 아주 어린 외국 유학생들

학부모님께 알리는 말씀

2004년 1월 1일부터 초등학교는 외국 유학생이 부모 중 최소한 한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1-6 학년에 등록시킬 수 있고, 초등학교가 아닌 다른 교육기관의 경우에도 10세 및 그 이하의 외국 유학생을 등록시킬 경우에는 동일합니다.

“외국 유학생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실천요강”에서 정한 부모의 개념에는 법정가디언도 포함되며, 법정가디언이란 다음과 같은 사람을 뜻합니다:

- a) 해당 해외 유학생의 관리(교육 및 건강관리 포함)에 관한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
- b) 뉴질랜드 또는 해외의 법정에서 지명을 받았거나, 유언서에 의해서 지명을 받은 사람 (어린이의 부모가 사망하였을 때 유언에 의해 지명된 사람)
- c) 모국에서 통상적으로 해당 해외 유학생의 관리를 담당하던 사람

위의 3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1-6 학년에 다니는 외국 유학생, 기타 교육기관에 다니는 10세 및 그 이하의 외국 유학생은 **반드시** 부모나 법정가디언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학생이 부모나 법정 가디언과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것이 발견되면, 학교에서는 등록을 취소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가 실천요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어린 외국 유학생의 부모는 다른 종류의 비자/체류허가를 받아 뉴질랜드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디언 비자/체류허가

- 이것은 복수 입국 방문비자/체류허가입니다.
- 가디언 비자/체류허가는 17세 및 그 이하, 또는 1-13 학년에 등록된 학생비자/체류허가를 가지고 있는 학생의 가디언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에게 발급됩니다.
 - 선의의 신청자일 것
 - 뉴질랜드에 충분한 생활 자금을 가지고 있을 것
 - 왕복항공권(또는 귀국항공권)이 있을 것
 -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요건을 갖출 것
- 이민성에서는 친부모 뿐만 아니라 입양한 부모, 유언서 또는 법정에서 지정된 가디언도 포함시켜 법정 가디언으로 해석합니다. 법정 가디언이란 해당 유학생의 관리를 제공할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을 지는 모국에서 통상적으로 해당 학생의 관리를 담당하던 사람을 말합니다.
- 가디언 비자/체류허가의 기간은 12개월이며 학생의 과정이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학생의 체류기간에 맞춰 발급됩니다. 학생의 학습과정이 12개월을 초과하면 가디언 비자/체류허가는 12개월로 발급받고, 만기 시에 다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중 한 사람(또는 법정 가디언)만 가디언 비자/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생의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법정 가디언이 그 학생과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 가디언 비자/체류허가가 취소됩니다.
- 가디언 비자/체류허가를 가진 사람은 뉴질랜드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3 개월 미만의 학습과정에 등록하여 공부를 할 수는 있습니다. 법정 가디언이 3 개월이 넘는 학습 과정에 등록하려면 뉴질랜드 이민성에 체류허가 조건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비자

부모나 법정가디언은 방문자 신분으로 자녀들과 함께 뉴질랜드에 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학습기간 동안 뉴질랜드에 체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뉴질랜드 방문자는 매 18 개월 마다 최장 9 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뉴질랜드에 최장 9 개월 체류한 후 귀국해야 하며, 그후 9 개월 동안은 다시 방문자로 입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학생 비자

외국 유학생의 부모나 법정 가디언이 자녀가 공부하는 동안 본인도 유학을 원할 경우에는 학생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